

---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水資源管理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7年2月24日(月) 午前10時

場所 水資源管理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中改正 條例案
  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使用料調整同意案
-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中改正 條例案(鄭炳權 議員 發議) ... 2面
  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使用料調整同意案(서울特  
別市長 提出) ... 2面
- 

(10時 15分 開議)

○委員長 宋德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臨時會 제4차 水資源管理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長 여러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案件은 지난 2월 20일 제3차 水資源管理委員會에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議案의 성립여건의 부적합함이 지적되어 委員長들간에 의견 조정 결과 심사를 보류시키되 委員會 發議로 條例를 改正하는 선에서 本 案件을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本 案件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

로서 이번會期에 심사·처리되지 못할 경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지난 2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주차요금이 50% 인상됨에 따라 한강공원 주차요금도 대폭 인상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긴급히 條例改正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긴급하게 本 案件을 상정하게 된 것이므로 委員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1.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鄭炳權 議員 發議)
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使用料調整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17分)

○委員長 宋德華;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발의하신 鄭炳權 委員님께서 本 案件의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權 議員; 鄭炳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本 改正條例案을 발의하여 本 委員會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조성하겠다는 動議案이 법적하자로 인하여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할 경우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이 평균 50% 인상되었고,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또한 인상된 주차요금의 70/100을 받도록 연동되게 하였으므로 한강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엄청난 요금인상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本條例改正案을 긴급하게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公共施設의 使用料를 결정하고 조정시에는 條例改正을 통하여 징수·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事案에 대해서는 立法豫告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는 現行 條例上에 動議案 形式으로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인 立法豫告 절차가 무시되고 생략되는 등 시민의 의견수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 改正條例案을 통하여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 금액 및 조정 결정사항을 條例에 직접 규정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事案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 立法豫告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

가 제공되도록 부적합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市長이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條例에 사용료를 직접 규정하고, 둘째, 사용료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넷째, 사용료징수·과태료징수·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本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本 改正條例案으로 대체하고 폐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德華;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執行部가 올린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委員이 안 계시므로 鄭炳權 議員께서 발의

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가결하고 議案番號 제705호  
로 상정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은 本 改正條例案으로 대체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鄭炳權 議員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  
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議案番號 제705호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本 改正條例案으로  
대체하고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宋德華; 이상으로써 제92회 臨時會 제4차 水資源管  
理委員會를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0時 23分 散會)

---

○出席委員

宋德華 尹鍾一 李建行 金天柱

李善宰 鄭炳權 崔鍾德 朴南植

○專門委員

金泰鎬